

교원인사규정

1996.03.01. 제정	1998.02.23. 일부개정	1998.09.01. 일부개정	1999.03.01. 일부개정
2000.03.01. 일부개정	2000.04.01. 일부개정	2000.07.01. 일부개정	2001.02.01. 일부개정
2009.09.01. 일부개정	2011.02.01. 일부개정	2011.04.20. 일부개정	2011.09.28. 일부개정
2012.01.27. 일부개정	2012.07.22. 일부개정	2014.06.24. 일부개정	2019.06.25. 일부개정
2020.03.27. 일부개정	2020.12.22. 일부개정	2021.05.27. 일부개정	<u>2023.04.13. 일부개정</u>

<교무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이 한다) 교원의 임용 및 인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

제2조(교원의 구분) ①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② 전임교원은 정년트랙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③ 정년트랙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

④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기간제교원, 조교수(외국인),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말하고,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04.13.)

⑤ 비전임교원은 강사, 명예교수, 석좌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6.25.)

[본조 신설 2014.6.24.]

제2조의2(적용의 대상) ① 이 규정은 정년트랙전임교원에게 적용하며, 비정년트랙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자격, 임면, 처우,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교원(정년트랙) 인사에 관하여 관계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중전 제2조(적용의 대상)를 제2조의2로 이동 <2014.6.24.>]

제3조(겸직금지) ① 전임교원은 타 기관의 전임직을 겸할 수 없다.

② 교원이 다른 학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 또는 다른기관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직을 위촉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교원의 정년) ① 전임교원의 정년은 동명문화학원 정관 제45조 4에 의한다.

② 정년에 도달한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③ (삭제 2020.3.27.)

제5조(교원인사위원회) ①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의 임용, 승진 등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소급발령금지)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하며 발령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임용 및 승진

제7조(교원의 임용권) 교원의 임용은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정관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1.4.20, 2012.7.22.)

제8조(임용기간) ①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다만, 조교수의 신규임용자는 2년간 계약제로 하고, 부교수와 교수의 신규임용의 경우에는 3년간 계약제로 한다. (개정 2009.9.1, 2011.9.28, 2012.7.22, 2014.6.24.)

직 위	임용 기간	재임용 시기
교 수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6년	재임용은 매년 2회로 한다. ·매년 3월 1일 ·매년 9월 1일
부 교 수	6년	
조 교 수	4년	

② 교원을 임용할 때의 임용기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용기간중에 승진, 강임된 자는 그 발령일로부터 다시 임용기간을 적용한다.

③ 학기 도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한다.

④ 임용기간 중 병역복무, 해외유학,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직한때의 그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9조(신임교원의 자격) ① 본 대학교의 교원은 고등교육법 및 동명문화학원 정관과 제1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6.24.)

② 신규로 임용되는 교원은 최근 3년 이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200%이상 게재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박사학위논문은 기간에 상관없이 100%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24., 2020.3.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채용하는 신임교원의 자격은 「전임교원특별채용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5.27.)

제9조의2(채용원칙)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전임교원특별채용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1.2.1.)

② 교원의 신규채용은 매 학기초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운영상 필요한 경우 연중 수시로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11.2.1.)

③ 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교원이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2.1.) (개정 2019.6.25.)

④ 제3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되며,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1.2.1.) (개정 2019.6.25.)

⑤ 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임교원신규임용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1.2.1.) (개정 2019.6.25.)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 등의 심사

(신설 2011.2.1.)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신설 2011.2.1.)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신설 2011.2.1.)

[제4항에서 제5항으로 항 이동]

제10조(신규임용 직급결정) ① 신규임용 교원의 직급은 조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수교원 초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교수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2.1, 2012.7.22.)

② 퇴직교원을 재임용 할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직위보다 상위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퇴직전의 당해직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신규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14.6.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 및 임용전 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12조(교원 신규임용 구비서류) 교원의 신규 임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임용 후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9.1, 2014.6.24.)

1. 교직원 인사기록카드 【본 대학교 소정 인사서식】 1부
2. 신원진술서 【본 대학교 소정 인사서식】 2부 (개정 2009.9.1.)
3. 이력서 1부
4. 기본증명서 2부 (개정 2009.9.1.)
5. 가족관계증명서 2부 (개정 2009.9.1.)
6. 학력 및 성적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각1부
7. 전직 경력증명서 일체 각1부
8. 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의원 발행) 1부
9. 병적 확인서(주민등록초본) 2부
10.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외국인등본) 2부
11.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물 각 1부
12. 서약서 【본 대학교 소정 인사서식】 1부
13. 사진5매(4×5) 1부 (개정 2009.9.1.)
14. 표준봉급월액사정카드 【본 대학교 소정 인사서식】 1부 (개정 2009.9.1.)

제13조(승진시기 및 소요년수) ① 본 대학교 교원의 승진 임용 시기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실시하며 승진에는 다음과 같이 경력년수를 요한다. (개정 2012.7.22.)

직 위	최소한 소요년수	승진되는 직위
부 교수	5년	교 수
조 교수	6년	부 교수

- ② 제15조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신입교원의 계약기간인 재직년수는 승진소요년수에 산입한다.
- ④ 승진소요년수산정에 있어 타 대학(교)의 동일직급 이상의 재직년수는 합산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타 대학(교)의 동일직급 이상의 근무경력은 본 대학교에서 6개월이상 근무경력자에 한하여 승진소요년수에 산입할 수 있으며, 교수직 승진의 경우는 2년이상 본 대학교 경력자로 한다. (개정 2014.6.24.)

제14조(승진심사기준 및 절차) 본 대학교 교원의 승진은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의해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9.9.1, 2011.4.20, 2012.7.22.)

1. 교원업적평가규정 상의 임용기준 충족 (개정 2009.9.1.)
2. (삭제 2009.9.1.)
3. (삭제 2009.9.1.)
4. 교육관계법령 준수 및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5. 학교의 발전 공헌도
6. 교수법 강좌 이수 (개정 2009.9.1.)

제15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 될 수 없다. (개정 2020.12.22.)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경우. 다만 본 규정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의한 휴직은 제외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 제한 기간은 전의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의한 승진제한 기간을 가산한다.
가. 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 ②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장관 또는 총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승진임용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16조(재임용심사기준 및 절차) 본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의해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1.4.20, 2012.7.22, 2014.6.24.)

1. 재임용심사기준은 제14조 승진기준의 1내지 5에 의한다.
2. 재임용심사기준에 건학이념의 구현 및 대학발전의 기여도 그리고 법령준수,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3.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조건부로 기간제임용을 할 수 있다.
4.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정원관리) 임용권자는 교원의 연구분위기 조성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실정에 맞추어 분야별, 직급별 교원의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삭제 2009.9.1.)

제18조(신임교원의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연수) ① 신규임용되는 교원의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연수는 <별표 1>의 환산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6.24., 2019.6.25.)

②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14.6.24.)

③ 동일기간 중 둘이상의 기관에서 전임으로 교육 또는 연구경력을 취득한 자는 하나만을 계산한다. (신설 2014.6.24.)

[제목 개정 2014.6.24.]

제19조(삭제)

제20조 (삭제 2014.6.24.) [제18조로 통합]

제21조(교원업적평가) ① 승진 및 재임용시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2009.9.1.)

② (삭제 2009.9.1.)

③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이(예. 체능은 석사학위 소지) 우리대학교에 재직 중 박사학위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박사학위 논문을 학술진흥재단등재지(후보지) 1편의 점수로 인정한다. (개정 2009.9.1.)

④ (삭제2009.9.1.)

⑤ (삭제2009.9.1.)

제22조 (삭제 2009.9.1.)

제23조 (삭제 2009.9.1.)

제24조 (삭제 2009.9.1.)

제25조 (삭제 2014.6.24.)

제26조(교원임용절차) 교원임용(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시 발령과 함께 임용장을 교부한다. 다만, 해직, 이동, 휴직, 기타의 경우에는 인사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제27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8조(인사기록) 교원의 인사에 관한 일체서류는 법인사무국에 비치한다.

1. 임용, 승진에 관한 서류
2. 포상에 관한 서류
3. 징계에 관한 서류
4.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5.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제3장 휴직 및 복직 (개정 2009.9.1.)

제29조(휴직 및 복직) ① 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20, 2012.7.22., 2014.6.24., 2020.3.27., 2020.12.22.)

각호	휴 직 내 용	휴 직 기 간	휴직중 처우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1년 이내	정관 제42조에 의함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봉 급 없 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3개월 이내	봉 급 없 음
4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봉 급 없 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3년 이내로 하되,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음	봉 급 없 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고용기간	봉 급 없 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	봉 급 없 음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서 정한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3년 이내	봉 급 없 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및 배우자, 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봉 급 없 음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음. 다만, 총 휴직 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봉 급 없 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휴직기간은 전임기간으로 함	봉 급 없 음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2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1회에 한함	봉 급 없 음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7.)

③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다만, 기한 내 복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직되며 휴직 중 지급한 급여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4., 2020.3.27.)

④ (삭제 2020.3.27.)

⑤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0.3.27.)

제4장 교원의 복무 및 보수 (개정 2009.9.1.)

제30조(교원의 복무) ① 교원은 본 대학교 건학정신 및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2009.9.1.)

제31조(교원의 보수) 교원의 보수는 교직원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09.9.1.)

제5장 징계 (개정 2009.9.1.)

제32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행한다.

1. 본 법인의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상부의 지시 또는 명령에 불복한 자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자
3. 교원으로서 품위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4. 기타 교원징계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있는 자

제33조(징계위원회) 교원의 징계 심사는 동명문화학원 정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행하며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34조(직위해제 및 해임) 교원의 직위해제 및 해임은 동명문화학원 정관 제43조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신분보장 (개정 2009.9.1.)

제35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임용기간 중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 해직,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의 개폐로 인해 폐직이나 감원이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장 보직 (개정 2009.9.1.)

제36조(보직자의 자격과 임면) ① 보직이라 함은 직제규정에 정한 직위에 보하는 것을 말하며 이의 임면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09.9.1.)

1.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본부의 본부장, 처장, 학장 및 산학협력단장 등의 보직교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9.1, 2011.4.20., 2012.7.22., 2019.6.25.)
 2. 제1호 이외의 보직교원은 총장이 임면한 후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9.9.1.)
- ② (삭제)

제8장 보칙 (개정 2009.9.1.)

제37조(법의적용) 본 규정에서 미비한 사항은 법인 정관 및 고등교육법, 관할기관의 인사지침을 준용한다.

제38조(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당시의 모든 교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1998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11년 10월 1일자 교수승진임용 신청자는 정년보장임용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교수임용(6년간 계약제)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4조, 제16조, 제25조, 제29조 제1항, 제36조 제1호는 정관 제37조 제2항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의 개정 시행일에 따라

2012년 5월 25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개정일 현재 재직 중인 전임강사는 이 규정의 개정일자로 조교수로, 전임강사(기간제)는 조교수(기간제)로, 전임강사(외국인)은 조교수(외국인)으로 직급을 전환한다.

②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전환하는 교원의 재임용은 전임강사 임용기간 만료일에 하며, 재임용시 임용기간은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전환하는 교원의 부교수 승진시 승진 소요기간은 개정 규정을 적용하되, 전임강사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④ 이 규정 개정일 현재 재직 중인 조교수의 부교수 최소 승진소요년수는 4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규정의 개정) 조교수(기간제)임용규정 제1조 중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5항”을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4항”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규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0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1.27, 2012.7.22., 2014.6.24., 2019.6.25.)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연수 환산율 산출기준

구분	경력 내용	환산인정률(%)	비고
1. 교육경력연수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전임교원 교육경력	100%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비전임교원 교육경력	주당5시간이하 30%, 5시간 초과시 시간당 10%가산	50%를 초과할 수 없음
2. 연구실적연수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을 경우 그 연구경력	100%	석·박사과정 재학연수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 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경력	100%	석사과정 재학연수(단, 2 년을 초과할 수 없음)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	70%	석·박사과정 재학연수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 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석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	70%	석사과정 재학연수(단, 2 년을 초과할 수 없음)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	100%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0%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도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	70%	다만, 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일 때에는 100% 인정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	100%	
<p>※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인정범위</p> <p>① 연구실적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p> <p>②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및 산업체에서의 근무 경력은 교원이 담당하는 교과목과 관련이 있는 것에 한한다.</p> <p>③ 동일기간 중의 교육 및 연구경력은 그 중 하나만을 인정한다.</p>			

<별표 2> (삭제 2014.6.24.)

<별표 3> (삭제 2009.9.1.)